

2009. 2. 25. (수) 10:00

제157회 거창군의회(임시회)

조례안 검토보고서

산업건설위원회
[전문위원 서종진]

<의안번호 제2009 - 4호>

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
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I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9년 2월 13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(경제과장)
- 다. 회부일자 : 2009년 2월 17일

II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교통안전법」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·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두되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
- 구 「교통안전법」(법률 제7516호) 제13조 규정에 따라 거창군 교통 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.

III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.(안 제2조)
 - 위원회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등을 심의·의결함.

다.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)

- 구성 :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장 : 군수, 부위원장 : 위원 중에서 호선
 - 위 원 : 군 소속공무원, 군의원 등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장과 관할 운수단체 지부장 등 관계전문가
- 임기 :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가능
- 회의 : 위원장이 소집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경미한 안전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의안처리 가능함.
- 전문위원, 간사 및 서기 등 직책 설치
 -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·연구하기 위해 위원장의 위촉으로 3명 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.
 -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둠.
- 수당 등 :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함.

IV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개정된 교통안전법(2006. 12. 28 전부개정) 제13조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에서 시장·군수 소속하에 「시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」를 두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구 「교통안전법」

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거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」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.

-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능, 위원회 위원 구성, 위원장의 직무,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시달된(2008. 9. 5) 조례표준안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V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, 제17조, 제18조
-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2009년 본예산에 반영(위원회 참석수당 1,400천원)

다. 합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(2009. 1. 21. ~ 2009. 2. 9.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관련법령 발취

【교통안전법】

제2장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

제12조 (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[제15조](#)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국가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. <개정 2008.2.29>

③위원은 지정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④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사무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한다.

⑤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⑥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으로 정한다](#).

제13조 (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)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[제17조](#)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하에 시·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하에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지사가 되고,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[대통령령이 정하는](#)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조 (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요청) ①국가교통안전위원회 또는 지역교통안전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 ①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

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>

③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④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8.2.29>

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 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)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>

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교통안전법시행령】

제8조 (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도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한다.

② 시·도교통안전위원회 및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(이하 "지역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